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
47~47p 5. ④	개념, 공식-설명	④ 주식회사는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,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이사회, 집행 사항을 감독하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며, 집행인인 이사와 감사인인 감사는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 며 그 임기는 이사는 3년, 감사는 2년이다.	④ 주식회사는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,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이사회, 집행 사항을 감독하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며, 집행인인 이사와 감사인인 감사는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 다. <table><tr><td>이사의 임기 (상법 제383조)</td><td> ·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·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. </td></tr><tr><td>감사의 임기 (상법 제410조)</td><td>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</td></tr></table>	이사의 임기 (상법 제383조)	·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·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.	감사의 임기 (상법 제410조)	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
이사의 임기 (상법 제383조)	·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·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.						
감사의 임기 (상법 제410조)	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					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